


 축산  
법령

##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

[시행 2019. 10. 10.]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-54호, 2019. 10. 10., 일부개정]

### ◆ 개정이유 [일부개정]

그간 조류인플루엔자(AI)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AI 발생을 예방하고 상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- 가금농가 방역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 임무 부여, 전통시장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 강화, 방역지역 내 분뇨에 대한 방역조치 조정 등을 위해 「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」 개정 추진

### ◆ 주요내용

○ 대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 방역업무 부여

- 선입된 농장의 방역기준\*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행 관리(안 제7조제2항)

\*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"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"과 "가축소유자들의 방역기준" 준수 여부 확인

○ 전통시장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 방역관리 강화

-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·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판매소 등 방역강화관리대상\*에 대한 정기적 인 예찰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(안 제6조제2항)

\* 닭과 오리 판매소, 가든형식당, 가축거래상인(계류장 포함) 및 가금 공급농가

- 시장·군수는 방역강화관리대상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, 관계기관장\*은 방역업무 지원(안 제6조제5항)

\*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, 시·도지사, 검역본부장, 방역지원본부장, 축산물품질평가원장

○ AI 발생 시 방역지역 내 방역조치 일부 조정

- 예찰지역(반경 10Km) 내 원활한 닭의 분뇨 처리를 위해 반출 가능 범위를 현행 예찰지역에서 발생 시·군까지 확대\*하되, 예찰지역 외로 이동할

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이동 허용(안 제23조제3항제4호)

\* 시장·군수가발생시·군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

〈법제처 제공〉

## ◆ 개정문

◎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-54호

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3조제5항, 제5조의2, 제13조, 제15조, 제17조, 제17조의6, 제19조, 제20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른 「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」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-54호, 2019.10.10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9년 10월 10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

[본문 생략]

## 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